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자료**	희망의 새시대 http//www.motie.go.kr
2013년 12월 3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- 무역투자실 국내대책과 최호천 과장(044-203-4140), 전준연 사무관(044-203-4143)	

2013년 하반기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 결과

□ 산업통상자원부 FTA 국내보완대책의 **체감도 제고**를 위해 '13년 하반기 **4건의 이행과제**를 선정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음

○ 4건의 이행과제는 **폐업지원 직불제 개편,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,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켓팅 지원,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** 등으로,

○ 이행과제에 대한 **분기별 점검결과, 성과평가결과, 국회·감사원·언론**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하였음

○ 현장방문은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**제도개선 사항 발굴**에 초점이 있음

□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음

○ (과수 폐업지원 직불제)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폐원한 과수원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 다른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품목을 **재경작 하지 못하도록 지도관리** 필요

○ (축산 폐업지원 직불제) 폐업지원금 신청시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폐 축사를 소 사육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임차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 신설 필요

○ (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)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수급자격 증명을 위해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'**사매매 구매확인서**(간이세금계산서 등)'를 제출하지만 동 입증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져 증빙자료의 **공신력 강화장치 마련** 필요 등

□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그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**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**을 지원

○ 아울러, 내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의 **실효성**을 높여나갈 계획임

<첨부> 2013년 하반기 FTA 국내보완대책 현장방문 결과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2013년 하반기 FTA 국내보완대책 현장방문 결과

◈ 한 미 FTA 및 한 EU FTA 발효에 대응하여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·의견수렴 결과 제도개선(건의) 사항

○ 2013년 하반기 현장점검 분야

- ①폐업지원직불제, ②농식품 19대수출상품 집중육성, ③의약품분야 글로벌 마케팅지원, ④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

Ⅰ. 현장방문 이행과제 선정사유

□ FTA 국내보완대책 분기별 이행과제 점검결과, 감사원·국회 지적사항,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4개 과제 선정

점검대상 이행과제	점검일	선정사유
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(경북 영천시청)	'13.10.10 ~11	한·칠레 FTA 폐업지원금 수령 농[illegible] 다수가 5년내 동일품목 재경작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재경작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
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 (한국인삼공사 부여 인삼창, 경북 구미시 원예수출공사)	'13.10.28 ~29	2012년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평가 결과 성과목표 미달 (전략품목 수출증가율 목표 : 21%, 실적 : 15.1%)
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케팅 지원 (한국보건사업진흥원)	'13.10.30	'13년 상반기 예산집행 부진(점검결과)
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(군산시청, 옥도면사무소)	'13.12.18 ~19	'12~13년 예산집행 부진(점검결과), '12년 직불금 부정수령 언론보도(김춘진 의원 제기)

Ⅱ.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(건의) 사항

(1)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

<과수분야>

□ (제도개선)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강화 필요

○ 시장·군수는 지원금 지급 후 폐원한 과수원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5년 동안 동종 품목이 재경작 되지 않고, 폐업지원금 수령자가 타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작물을 재경작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,

○ 읍·면에서 이뤄지는 사후관리는 폐원한 과수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, 지원금 수령자가 폐원한 과수원 이외의 자기 소유 농지 또는 임차지에서 동일 작물 재경작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부재

➔ (권장 건의사항)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방식 및 기관 변경 필요

○ 현재 읍·면사무소 담당자가 폐업지원금 수급자를 5년동안 연 1회 방문하여 재경작 여부를 조사하지만 인척·지인들로 구성된 지역사회 특성상 재경작 사후관리에 한계(관리대상자 모두 가까운 친인척, 지인 등)

○ 따라서, 사후관리 기관을 현행 시·군(읍·면)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고, 관리방법도 현지 대면조사에서 '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'을 활용 상시 관리체제로 변경 필요

<축산분야>

□ (제도개선) 폐업한 축사를 소 재사육 목적으로는 사용제한 필요

○ 현재와 같이 폐 축사의 매각, 임차가 가능하고, 폐업농이 폐 축사에서 타인 소유의 소에 대해 위탁사육이 이뤄지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신청시 재사육 금지기간인 5년간 폐 축사를 소 사육 목적으로는 양도, 임차하지 못하게 제한규정 신설 필요

□ **(제도개선) 폐업지원금 신청요건을 축산현장에 맞게 재조정 필요**

○ 현재와 같이 특정기간(보통 1년) 동안 출하실적이 없으면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소 사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실정

○ '13년 '한우'처럼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으로 고시되고, 농가에서 정상적인 사육이 이뤄질 경우, 출하 실적이 없어도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

◆ **(현장 건의사항) 적정 소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'소 수매제' 재실시**

○ '13.10.17 기준 3.7백만두 수준인 전체 사육두수를 2.5백만두 수준으로 조절하기에는 폐업지원금 만으로는 어려운 상황

○ 축산현장에서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강력히 희망하는 소 수매제(암소 도태장려금제 포함) 실시의 전향적 검토 요청

(2)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

◆ **(건의사항) 성과목표 설정 시 대외적인 여건 고려 필요**

○ '12년 농식품 전략품목* 수출은 대내외적 경기악화 및 전체 수출액 감소(△1.3%)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유지(전년대비 15.1% 증가)

* 인삼, 딸기, 장미, 국화 등 **19개 농식품 수출전략품목**

○ 하지만 '12년 성과목표 설정 시 '11년 증가율(18.5%) 추세선을 반영,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결국 목표 미달

○ 향후 성과목표 설정시 추세선 외에 대내외적인 여건 등도 함께 고려 필요

<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>

구분		'09	'10	'11	'12	'13
▪ 수출 전략품목 수출증가율(%)	계획	-	-	-	21	20
	실적	8.4	20.4	18.5	15.1	

(3) 의약품분야 글로벌마켓팅 지원

□ **(제도개선) 사업 위탁계약 조기 체결을 통한 예산집행 부진 방지 필요**

○ 보건복지부가 매년 3월말에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집행이 4월말경 이루어져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

○ 보건복지부와 사업시행 주체간에 위탁계약을 1월중으로 체결하여 2월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시기 재검토 필요

(4)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

□ **(제도개선) '연간판매액' 증빙 자료 공신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**

○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,

- 수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협위판 증명서, 사매매 구매확인서(간이세금계산서 등)를 첨부하거나,

- 1년중 60일 이상을 맨손어업 등 어업에 종사한 어촌계 조업일지, 어선어업을 위한 입·출항신고서를 첨부해야함

○ 대부분의 직불금신청서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'사매매 구매확인서'로 제출되어 공신력 강화장치 마련 필요

- '사매매 구매확인서' 허위발급 가능성 및 이를 통한 무자격자가 수산직불금 수급 가능성 차단

□ (제도개선)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제출서류 간소화

○ 현행 8종의 제출서류를 4~6종으로 간소화 필요

- 현행 : ①사업신청서, ②마을발전계획서, ③수산직불금지급약정서, ④조업·출항일지, ⑤판매확인서, ⑥건강보험증, ⑦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, ⑧관리협약 등 8종

- 개선 : ⑥번은 행정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가능하고, ⑦번 자료는 ③번 자료의 '개인정보 활용 동의서' 양식이 있으므로 생략가능

- 또한, 향후 일선 현장에서 건의하는, 가칭 '어업경영체등록시스템' 도입시 ④번 자료와 ⑤번 자료도 동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

◆ (현장 건의사항) 가칭 '어업경영체등록시스템' 구축 필요

○ 수산 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가칭 '어업경영체등록시스템' 구축 필요

-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, 입력, 활용 등 각종 수산정책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'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'과 유사한 수산분야 '어업경영체등록시스템' 조기 도입 필요

◆ (현장 건의사항) 수산직불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

○ 총지원액 49만원 중 개별어가(70%), 공동기금(30%)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총지원액 49만원 전체를 개별어가 지원

- 전체지원액 49만원도 사업목적 달성에 부족한데, 이중 30%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면 지원규모가 더 줄어들어 어가별 지원효과 미미

- 공동기금 규모가 '어촌의 공동 종패사업' 등 어촌활성화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작아('13년 시범사업 두 곳 규모 : 100만 수준) 효과 의문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